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9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모경종·황명선·서영교

전현희 • 이성윤 • 박정현

박해철 • 채현일 • 허성무

최민희 • 박용갑 • 이광희

홍기원 · 김성환 · 정일영

김문수 · 오세희 · 박지원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집회 및 시위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1.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대 가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 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제1호에 규정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22조제3항 중 "제5조제2항 또는"을 "제5조제2항, 제5조의2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5조의2(집회 및 시위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
	나 참가하지 아니하도록 하
	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금품이나 향
	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
	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
	낙하는 행위
제22조(벌칙) ①・② (생 략)	제2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	③ <u>제5조제2항, 제5조의2 또는</u> -
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